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2조의3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희망 규격, 수량,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치비'가 아닌 '별도구매'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종합쇼핑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1항의 공고기간 종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제안공고 시 세부품명별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

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기본평가항목 및 선택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 (예시) 가. 1순위자~4순위자가 각 1인, 5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5순위자까지 총 7인

나. 1순위자가 1인, 2순위자가 2인, 3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3순위자까지 총 6인

다. 1순위자가 7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1순위자 7인

2. [별표 5]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규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서 제출)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규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 없이 납품할 수 있다.

제5조(제안품목의 구성)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 상대방은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을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을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규정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및 납품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선호도' 평가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을 '가격' 평가의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을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의 2(사전판정 결과 통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업체 사전판정 결과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제안서 제출업체에 사전판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안서 제출업체는 사전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업체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사전판정 오류 또는 착오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판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공고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취소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동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제안공고, 제안요청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공고서 입력오류 등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의2 각 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57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규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